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36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 2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주식형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08.10.11 - 2009.10.10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한화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제이피모간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, 크레디트스위스증권, 골드만삭스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하나대투증권, 도이치증권, KTB투자증권, 엘아이지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09.05.03	자통법전환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으로 전환	삼성 Kodex 200 상장지수투자신탁	삼성 KODEX 2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]
2009.06.18	제 20 조(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) 제32조(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 청구권) 제 35 조(투자 한도)	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5 조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 다만,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. 3. 제 1 호의 규정에도	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54 조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 다만,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. 3. 제 1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 1 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야 한다. 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

	<p>제36조(운용 제한)</p> <p>제 46 조(신탁 계약의 변경)</p>	<p>불구하고, 제 1 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의 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야 한다.</p> <p>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(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)과 집합투자자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</p> <p>2. 제 34 조제 1 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신탁업자의 변경</p>	<p>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(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)과 집합투자자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</p> <p>2. 제 32 조제 1 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신탁업자의 변경</p>
<p>2009.07.30</p>	<p>제 34 조(투자대상등)</p> <p>제 35 조(투자한도) 신 설</p> <p>제 36 조(운용 제한)</p>	<p>신 설</p> <p>3. 제 1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 1 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야 한다.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신 설</p>	<p>4.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 이라 한다)</p> <p>3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이하로 한다.</p> <p>4. 제 1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 1 호 및 제 3 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야 한다.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7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8.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

			<p>9.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(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) 또는 투자중개업자(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)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10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</p> <p>②제 35 조 및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5 조제 1 항제 2 호, 이 조 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4 호, 제 7 호 및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1 월간은 제 35 조제 1 항제 4 호, 제 1 항제 2 호 및 제 4 호, 제 7 호 및 제 10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2009.10.01	제 20 조(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)	<p>2. 제 23 조 및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·환매요청 접수에 대한 공고 업무</p> <p>④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투자신탁분배금이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의 이 투자신탁이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, 이익분배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제 3 호에</p>	<p>2. 제 22 조 및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·환매요청 접수에 대한 공고 업무</p> <p>④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零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

제 41 조(투자신탁분배금지급)	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, 이익금이 “零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.
-------------------	-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해당사항 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660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□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
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 사항 없음

□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
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
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
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
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계정의
자산운용회사인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홈페이지(<http://www.samsungfund.com>)를
이용할 수 있습니다.